

2025년 하반기
남구 구인구직개척단 채용 공고

「2025년 하반기 부산광역시 남구 구인구직개척단」에 근무할 취업상담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취업상담원	8명	○ 구인기업 및 구직자 발굴 ○ 지역주민 일자리 상담 및 취업알선 ○ 찾아가는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지원 ○ 기타 구인·구직 관련 업무 등

2. 근무조건

- 가. 근무기간 : 2025. 07. 01. ~ 12. 31. [6개월]
나. 근무장소 : 남구청, 인생후반전지원센터, 부산고용복지+센터
다. 근무시간 : 주 35시간(월~금, 9시~17시 근무, 주 5일)
라. 임금수준 : 시급 10,030원, 교통·간식비 1일 5,000원 지급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3. 응시자격(채용조건)

-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직업상담원 관련 자격이 있는 자
 - ▶ [붙임] 직업상담원 관련 자격 참고
- 나. 사업개시일(2025. 7. 1.) 기준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 있는 자
 - ▶ 1960. 07. 02. ~ 2007. 07. 01. 출생자
-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라. 공고된 채용기간을 포함하여 남구 소속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의거)
 - ▶ 단, 남구 구인구직개척단 1년 이상 근무자 배제
-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가점 요건

- 가. 직업상담 관련분야 경력이 많은 사람
- 나.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 다.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 라. 취약계층 대상자(국민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자
- 마. 공고일 현재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 거주자
 - ▶ 직업상담 관련 분야 및 직무 관련 자격증 세부내역

분 야	종 류
관련 분야 근무경력	직업상담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직무 관련 자격증	직업상담사 1급·2급, 사회복지사1급·2급
전산 관련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2급) 정보처리기사(舊 1급· 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 직무관련 및 전산관련 자격증은 공고일(6. 2.)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만 유효

※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분야별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5. 채용방법 및 채용일정

- 가. 채용방법 : 1차 서류 및 2차 면접심사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1차 : 서류심사(자격기준 및 경력사항 등)
 - ▶ 2차 :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 선발 확정 후 결격자 또는 이직자 발생 시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 선발하며, 추가합격자는 퇴직자의 잔여기간만 근무

나.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내 용
채용공고	2025.6.2(월) ~6.11.(수)	남구 홈페이지 게재
원서접수	2025.6.4.(수) ~6.11.(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 내 09:00 ~ 18:00 (단,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남구청 일자리경제과(5층) 일자리팀 (☎ 607-4295)
1차(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5.6.13.(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홈페이지 게재 ▶ 선발인원 : 16명(채용인원의 2배수) - 선발인원 미달 시 지원자 전원 서류심사 합격
2차(면접) 심 사	2025.06.17.(화) 10:00(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장 소 : 남구청 소회의실(5층)
최 종 합격자 발표	2025.06.20.(금)	▶ 선발인원 : 8명(남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는 결격사유 조회 후 2025.06.27.(금)까지 근로계약 체결 및 직무교육 실시 예정

- 최종 합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 실시

[근무일 기준 1년 이내(2024.7.1.~2025.6.30.)의 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채용일정은 구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일정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 채용지원서(**자필 또는 워드**) 1부 : 사진 1매(3.5×4.5cm) 부착
- ▶ 이력서 1부 : 사진 1매(3.5×4.5cm) 부착(채용지원서 사진과 동일)
- ▶ 자기소개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나. 가점 해당자 제출서류

- ▶ 자격증(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직무관련 및 전산관련)
- ▶ 경력증명서(직업상담관련)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자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상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위·변조, 누락,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채용공고문 서식 이외의 서식은 구비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서는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 비치

라. 원서제출 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위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607-4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업상담원 관련 자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2012.6.5>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붙임 2】

직업상담원 공통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